#### <의안번호 제2007-28호>

# ─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── 검 토 보 고 서 ─

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. 9. 18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7. 9. 20.

## 2. 제정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,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함으로써, 우리 군민들이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게 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함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(안 제5조 및 제6조).

- 중요 행사시 "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"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-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
-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 자의 공적 게재
-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, 보훈관련 기념일·추모일 행사시 위문

-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다. 보훈단체 지원(안 제7조).
  -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
  - 호국 ·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, 전적지 등 순례사업
  -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- 라. 국가보훈대상자 예우(안 제8조).
  - 거창군이 설치・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관람료, 주차료 등 감면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-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·제5조·제18조·제19조·제22조· 제24조 등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2007년 당초예산 기확보(105,600,000원)
- 다. 입법예고(2007. 6. 1. ~ 6. 20.) 결과 : 의견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「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」을 근간으로 하여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,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**별다른 의견이 없음**.

-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
- (1) 조례안 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본문 중 "국가보훈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"보훈단체"라 한다.)"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
  - 「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7조(설립허가)제1항에서 '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허가서를 교부한다'라고 규정되어 있고.
  - 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 제2조(정의)에서는 '단체라 함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「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'라고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  -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서 **상위 법령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현 하거나** 또는 법률상의 표현인 "허가"라는 명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위 법령의 표현과 다른 "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"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(2) 조례안 제8조(국가보훈대상자 예우) 본문 중 '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거창군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관람료, 주차료를 감면한다'라고 규정한 내용은
 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(고궁 등의 이용보호)에서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

- ①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- ②선순위 수권유족
- ③애국지사와 상이(장애) 1급자의 보조인 1인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
- 조례안의 규정에서 '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' 라고 1인에 한해서만 감면대상을 한정한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 6. 참고자료

○ 관련법령 발췌

#### [국가보훈기본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희생·공헌자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 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-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 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 력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18조 (예우 및 지원의 원칙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- 제19조 (예우 및 지원의 실시)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22조 (보훈문화 창달 노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4조 (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·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,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#### [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]

제16조의2 (생업지원) ①국가,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05.3.31]

第23條 (古宮등의 利用保護)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大統領 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는 古宮 및 公園등의 시설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## [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]

**제15조 (고궁등의 이용)**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 <개정 1997.9.30, 2005.1.17>

####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86조 (고궁등의 이용보호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1987.12.31, 1991.12.31, 2002.12.30>

- 1.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- 2.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- 3.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. <신설 2002.12.30, 2004.3.17>
-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<개정1991.12.31, 2002.12.30>